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 감염 “여전히 위험”

유흥·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연장...5인 모임은 금지

유흥업·노래연습장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 받아야



광주시가 가족 간 전파 등 코로나19 생활 감염과 '조용한 n차 감염'이 끊이지 않자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2시간 늘렸다.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영업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체감 고통지수가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됐다. 단 종사

자들이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되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선제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월 들어 연일 두 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지고 산발적 감염으로 방역난이 가중되자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2주일은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화된 1.5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5월23~29일) 확진자수가 평균 13.9명으로 직전 1주일간(5월16~22일) 평균 13.4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족 갑 감염으로 학생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n차 감염'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업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단계 하향은 이르다”고 판단했다.

특별 방역주간임에도 유흥업소 등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216건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27건, 행정지도 189건이 진행되는 등 방역 불감증이 여전히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피로도가 높아지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민관 공동 노력의 결과 등을 토대로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의무검사를 전제로 영업시

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현재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 때 있는 영업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로 변경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은 금지하되,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등 나머지 수칙은 현재와 같이 모두 금지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끊이지 않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에게 대해서는 31일부터 2주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됐던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도 폭염 등을 피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변경했다.

김 부시장은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방활동”이라며 “사람 한 명 덜 만나기, 모임 한 번 덜 하기, 한 걸음 더 떨어지기 등 소위 '1·1·1 캠페인'과 에 집마다 가가호호 점검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정기자

여수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지난 3월부터 11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리하고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찾아 개선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호기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지점에 대해서도 점검하였다.

여수중고교 스쿨존 구역임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시간제(12시~15시)표지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어 시간제표시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표지판 9개소를 정비하였고, 성산초교 앞 보행자신호등 및 동초교 앞 노후되고 퇴색된 표지판 등 132개를 보수 및 교체, 신설하는 등 다각도로 점검하고 개선하였다.

아울러 일제점검 기간에 여수시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신월초교 등 과속단속카메라 21개소, 화양 안일초교 등 신호기 11개소 설치지점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완도해경, 연안해역 위험성 조사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성수기 여행객 증가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달 17일부터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를 실시중이다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완도서 관내 연안해역 수 지역을 대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며, 20년에 총 3구역(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 다발구역, 연안사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관내 위험구역 30개소를 평가하고 재지정·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어촌계장,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지역주민을 동행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차후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안전시설물(위험 경고판, 인명구조함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요소로 시설물을 추가·보강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6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위험성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연안해역의 안전사고는 순간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27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남부소방,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광주 남부소방서는 26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구조·구급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남부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자체 안내방송 지도 등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고종현 119재난대응단장은 “많은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대장암 수술 지연·털곰팡이균 늦게 발견 사망, 손배 책임

조선대병원 의료진, 진단 엿새 뒤 상태 악화되고 수술

허혈성 대장암 응급수술을 미루고 털곰팡이균 감염 진단·치료까지 지연시켜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측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장한 부장판사)는 의료 과실로 숨진 40대 남성의 아내 A씨와 자녀 2명 등 3명이 조선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학교 법인 조선대는 원고들에게 총 1억 4390여만 원(상속분·위자료·장례비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당뇨병성 신장병

증으로 2015년 9월 조선대 병원에 입원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이후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전공·분벽 가스를 동반한 허혈성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같은 해 10월 22일 상태가 악화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엿새 뒤인 10월 28일 응급 수술로 제거한 결과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털곰팡이균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6일 패혈증·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와 자녀는 '의료진 과실로 B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공·분벽 가스를 동반한 허혈성 대장암의 경우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제때 수술을 했다면 허혈성 대장암 원인인 털곰팡

이균 감염 진단·치료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 수술 지연 과실로 B씨가 숨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내용·진료기록 감정보관 결과 등을 종합하면, B씨는 진단 당일 국소 대장 전공을 동반한 허혈성 대장암의 상태에 있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 상태가 나아지리라 낙관할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데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대장 전공이 발생한 환자의 수술이 지연될 경우 패혈증으로 이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당시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의무 기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 수술을 할 수 없는 사유나 수술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사정인지를 구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하면 의료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유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